

의안번호	제 161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월 일 (제265회)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지사
제 출 연 월 일	2007년 10월 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161
----------	-----

제출연월일 : 2007년 10월 29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산재되거나 소규모인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대금으로 도유재산의 감소방지와 집단지 등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제고할 수 있는 토지를 대체취득하고
- 우리 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함에 있어
 - 기업입지가 불리한 지역에 유망기업의 투자유치위해 대상기업에 제공할 공장부지와
 - 오송생명과학단지내 BT,NT,BNT 등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물적, 인적 인프라 구축 및 입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충북바이오 연구타운」 유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며
- 자치연수원 교육생의 원활한 체육활동과 취미소양 프로그램 운영 및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 개선, 인근지역 주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자치연수원 부지 내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며
- 진천소방서 관할구역인 덕산면 일원의 산업단지에 공장증설과 인근의 혁신도시 건설 등 미래 소방 수요의 증가로 인한 덕산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청사를 신축하고자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재산의 취득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 대체취득》

- 위 치 : 도내 일원
- 매입규모 : 55,000㎡
- 사업기간 : 2008. 1 ~ 2008. 12
- 사 업 비 : 2,592백만원(도비)

《전략적 기업유치 위한 도유지 확대조성》

- 위 치 : 도내 3개 지역
- 매입규모 : 343,108㎡
- 사업기간 : 2008. 1 ~ 2008. 4
- 사 업 비 : 10,000백만원(도비)

《「충북바이오연구타운」 부지 매입》

- 위 치 :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오송생명과학단지 30블럭
- 매입규모 : 54,833㎡
- 사업기간 : 2008 ~ 2012(5년)
- 사 업 비 : 8,334백만원(도비)

《다목적체육관 신축》

- 위 치 : 청원군 가덕면 한계리 11번지
- 신축규모 : 1동 1,400㎡
- 사업기간 : 2008 ~ 2009(2년간)
- 사 업 비 : 2,200백만원(도비)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

- 위 치 :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287등 3필지
- 사업규모
 - 토지매입 : 3,300㎡(5,956㎡중 분할매입)
 - 건물신축 : 지하1층·지상3층 740㎡
- 사업기간 : 2008 ~ 2009(2년간)
- 사 업 비 : 1,550백만원(도비)

3. 예산상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재산취득	재산처분	비 고
계	24,677,116		
○ 보존부적합 도유재산 매각 대체취득	2,592,500		
○ 전략적 기업유치 위한 도유지 확대 조성	10,000,000		
○ 「충북바이오연구타운」 부지매입	8,334,616		
○ 자치연수원 다목적체육관 신축	2,200,000		
○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	1,550,000		

※ ()내서는 국비임

4.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5.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0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단위 : m²)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 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4 건	456,241.0	21,577,116				
	건물	2 건	2,140.0	3,100,000				
	기타							
1	토지	도내 지역 (세부내역 미정)	55,000.0	2,592,500	2008	재산 대체취득	미 정	
	건물							
	기타							
2	토지	보은군 등 3개 지역	343,108.0	10,000,000	2008	전략적 기업유치 위한 토지매입	(사유지)	
	건물							
	기타							
3	토지	청원 강외 만수 오송 생명과학단지 30블럭	54,833.0	8,334,616	2008~ 2012	「충북바이오연구 타운」 부지매입	한국토지 공사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청원 가덕 한계 11	1,400.0	2,200,000	2008~ 2009	다목적체육관 건립	신 축	
	기타							
5	토지	진천 덕산 옥동 287등 3필지(287,288-2,289)	3,300.0	650,000	2008~ 2009	덕산19인존센터 신축부지 매입	매 입 (사유지)	5,956m ² 중 분할매입
	건물	"	740.0	900,000	2008~ 2009	덕산19인존센터 신축	신 축	
	기타							
	토지							
	건물							
	기타							

관 계 법 령 발 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제 35조 제 6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0 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p> <p>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p>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